

#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713호)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. 10. 16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1. 10. 16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1. 10. 24

총무위원회 상정 · 의결

### 2. 개정이유

-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읍면 사무인력의 조정 및 주민자치센터 설립 등을 위한 전담기구의 필요에 따라 한시기구·정원이 승인됨으로 한시정원에 대하여 조례에 명문화 하고자 함.

### 3. 주요골자

- 한시정원(안 부칙 제2항)  
- 한시정원의 기한 : 2002. 12. 31

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읍면 사무인력의 조정 및 주민자치센터 설립 등을 위한 전담기구의 필요에 따라 한시기구·정원이 승인됨으로서 한시 정원에 대한 존속 기한을 동 조례 부칙에 명문화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### 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### 6. 토 론 : 없음

### 7. 심사결과 : 2001. 10. 24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